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168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99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2023. 12. 10.부터 위 제1항 기재 선내 (가)부분 99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C에게 각 월 1,000,000원, 선정자 D 및 E에게 각 월 500,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안태윤

별지